

대전지방법원 2019. 6. 26 선고 2019가단100599 판결 [입찰보증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0. 6. 9 선고 2019나111484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9. 6. 26 선고 2019가단100599 판결

전 문

원고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

담당변호사 이상호

피고A

변론 종결2019. 6. 5.

판결 선고2019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5,498,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0. 11.부터 2019. 1. 1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'청구원인'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45,498,3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납부기한일 다음날인 2018. 10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. 1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박정기

별지